



공시관행 개선, 전 금융권으로 확대

채원영 연구원

■ 금융감독원은 은행, 보험, 연금의 공시관행 개선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,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음.

- 보험회사의 공시관행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비율 등 주요내용 공시, 연금저축 통합공시 추진,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등을 통한 비교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이 발표된 바 있음.¹⁾

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의 공시 내용 개선, 홈페이지 내 '상품 공시실 메뉴'개설, 수수료 내역의 점포 내 비치 및 홈페이지 공시 등임.

- 금융상품의 계약조건, 거래비용 등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고, 공시항목 및 내용을 확충할 예정임.

■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, 직장 및 단체신협을 제외한 모든 영세 지역조합도 경영공시 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조합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함.

■ 각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 및 최근 자료의 공시 여부 등을 월별로 점검하고,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함.

- 또한, 각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비교공시 사이트 이용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공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.

(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공시관행 개선, 금융감독원, 11/9)

1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: 「“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”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」(’12. 6. 7); 「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」(’12. 7. 16).